

CISG상 매수인 구제수단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심 중 석*

목 차

I. 머리말	V.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II. 매수인의 구제권 일반	VI. 기타 매수인의 구제수단
III.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VII. 결론
IV. 추가기간의 지정과 보완	

(논문투고일 : 2012.8.6. / 논문심사일 : 2012.10.8. / 게재확정일 : 2012.10.22.)

I.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5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을 비준하여 이를 국내법화함으로써, 비로소 CISG를 수용한 전 세계 78개 계약국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참여주체로서 그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¹⁾

CISG는 복잡다단한 국제무역의 적용법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그간 국제사법체제하에서 다양한 법적용으로부터 비롯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부담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요컨대, CISG가 국제무역에서의 법적 분쟁과 다툼을 예방하고, 그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신속·민활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그 순기능적 역할을 어김없이 제고하고 있음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라고 하는 이견 없는 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²⁾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

1) 「www.unilex.info」, ‘Contracting State’, (2012.07.20)

이와 같은 CISG의 위상과 역할을 배경에 두고, 본 고에서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로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유관규정을 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 및 그 평가에 따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유관규정은 제45조(매수인 구제권 총괄),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제47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50조(대금감액),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제52조(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등이다.

II. 매수인의 구제권 일반

1. 매수인 구제권의 요건(제45조)

제45조는 매도인이 계약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위반을 범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³⁾ 본조 (1)항 (a)는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본조항 (b)에서는 제74조(손해액 산정) 내지 제77조(손해경감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한 청구금액은 제74조 또는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규정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본조 (2)항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기타의 구제수단에 관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3)항은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추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

2)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Printed in Austria), 2008, ix-xi.

3) Art. 45 : “(1)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buy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s 46 to 52;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s 74 to 77. (2) The buy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3)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to the seller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when the buyer resorts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다. 그 이유는 추가기간의 지정은 경우에 따라 CISG에서 수용하고 있는 제반 구제수단에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본조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CISG 여타 규정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보다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테면 제71조 내지 제73조(이행정지,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 분할이행계약의 해제) 또는 제84조(이익의 반환) (1)항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본조는 매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에 의하여 계약위반에 기한 구제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는 CISG가 기본적으로 제반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그대로 표창하고 있는 결과로 취급할 수 있다.

매수인이 어떠한 구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이 계약, 관습,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매도인이 CISG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추가책임, 이를테면 매수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⁴⁾를 연장시키는 책임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CISG에서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다름없이 보유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의 정도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곧, CISG에서는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이 행사된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5)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은행보증서는 은행에 신청하여 개설하는 일종 담보성질의 서류상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곧 신청인이 수익인과의 계약 또는 채무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은행이 담보책임을 진다. 은행보증서는 은행의 신용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쉽게 접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L/C)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곧 신용장과 구별은 신용장은 여타 상업관련서류를 요구하지만 은행보증은 위탁인의 위약성명과 증명에 한한다. 은행보증서는 거래쌍방이 계약서의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에 따른 지급책임이 없고 은행보증서는 기한 내에 유효하며, 기한이 지나면 보상지급이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보증서는 수정이 불가하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을 보다 구체적인 조건에 결부시켜 두고 있는 경우, 특히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내에 발송한 적절한 통지에 의하는 경우에 제38조(물품검사시기), 제39조(불일치의 통지), 제43조(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에 의거, 매수인이 당해 구제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추가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본조 (1)항 (a)에는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관한 적용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이하에서와 같이 제46조 (2)항, 제49조 (1)항 (a), 제51조 (2)항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49조 (1)항 (b)는 물품을 불인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50조는 물품이 불일치하는 경우 대금감액, 제51조는 물품 일부의 불일치, 제52조는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조 (1)항 (b)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곧, 매도인이 그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차등품의 인도로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약정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제71조에 의한 계약위반을 범한 경우 매수인은 이로부터 입게 된 그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또는 CISG에서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별단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제38조, 제39조, 제43조와 관련한 통지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본조의 적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객관적인 계약위반을 전제로 두고 있어, 여타 과실의 유형 또는 그 어떠한 명시적 보증에 대한 위반은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제79조의 제반 조건 또는 제80조(자신의 귀책사유와 상대방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아울러, 본조 (1)항 (b)에서는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금액의 결정기준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들 기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⁵⁾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 일체를 포함한다. 아울러, 그 밖의 구제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해 권리는 그 밖의 구제책과 병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수인이 취하는 구제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본조 (3)항은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그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유예기간의 허여가능성은 일련의 절차법에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 (3)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당사자는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당해 이행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요구의 이행지는 당해 주요 의무를 위반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CISG는 시효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요구가 적용되는 시효문제는 적용되는 국내법 또는 적용가능 한 경우에 1980년 개정된 ‘국제물품매매에서 기간제한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의해 결정된다.

본조상 그 밖의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입증책임의 문제는 본조 (1)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에만 관련된다. 결국, 당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입증책임, 곧 매도인 계약위반과 당해 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제79조상 면책에 관한 입증책임은 달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유의하여야 한다.

5)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2009, pp.61-64.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제45조에 기하여, 제49조의 적용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⁶⁾ 매도인[스페인]은 매수인[독일]과 자동차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이집트 및 이란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물품을 두바이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양당사자는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매번 계약은 대금 지급조건이 선불조건(advanced payment)으로 되었고, 그간 매수인은 이를 다름없이 이행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기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또한 과거의 계약에 의해 판매된 자동차가 일본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수인이 중동국가에서만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2) 판결요지

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은 당사자가 전언통신을 통해 청약하고 승낙함으로써 성립된 것이었다(제23조). 둘째, 매매계약에 물품이 중동국가에서만 전매될 수 있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들이 중동지역에서만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중동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이후 실시간으로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6) ‘Juzgado de Primer Instancia, n. 3 de Badalona’(Spain), 「Unknown」, 2006.05.22.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또는 판정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이하 본 문구는 생략한다).

① ‘ICC Court of Arbitration’(Paris, France), 「5713/1989」, 1989.
 ② ‘Corte di Appello di Milano’(Italy), 「790」, 1998.03.20.
 ③ ‘Landgericht Braunschweig’(Germany), 「21 O 703/01」, 2001.07.30.
 ④ ‘Pretura di Locarno Campagna’(Switzerland), 「6252」, 1992.04.27.

그러므로 매도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제40조(매도인의 약의)에 의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매수인이 제45조에 의해 제74조 및 제77조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49조 (1)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물품대금의 환불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은행송금비용을 이유로 일부분의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 이자에 대한 지급까지 명령하였다. 나아가, 본건 계약이행으로부터 매수인이 입은 수익의 손실까지 매도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3) 평가

매도인이 본건 계약을 위반한 원인은, 본 계약이 분배계약(distribution contract)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물품이 분할인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인도되는 것이라는 판단의 착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설령, 다른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를테면 매수인이 장래에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CISG에서는 분할인도인 경우에만 이러한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은 개별적이나 독립적 인도에 대하여는 본 계약해제의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본다.

III.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 매수인 이행청구권의 요건(제46조)

제46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⁷⁾ 본조 (2)항과 (3)항은 불일치한 물

7) Art. 46 : “(1)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품의 대체 또는 수리문제와 이와 관련한 구제수단에 관한 제한요건을 다루고 있고, (1)항은 그 밖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의무이행청구권은 제28조(이행청구와 국내법)의 제한을 받는다. 즉,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자국 법률에 의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ISG에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구제를 허용하여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이행을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특정이행에 관한 판결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의 의무이행청구권은 당해 의무의 존재와 계약위반을 전제하고 있다. 곧, 매수인은 본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청구는 명시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본조 (2)항과 (3)항에 의하면, 구제의 청구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상당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한편, 매수인은 제47조에 따라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2)항과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본조 (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예컨대 물품의 인도, 지정은행에서 담보기간의 획득, 독점적 판매의무의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법원의 협조를 통해 매도인 본래의 의무와 그 밖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 본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이행불능으로서 계약상 특정된 고유한 물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2)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i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3)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 request for repair must be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notice given under art. 39 o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는 의무이행의 권리도 소멸된다.

본조 (1)항은 매수인이 불일치한 물품에 관하여 구제를 행사하는 경우에 일정한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곧,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50조에 따라 물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에 관한 청구권과 남아 있는 손해, 예컨대 매도인의 의무이행 지연에 따라 야기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당해 의무이행을 청구한 매수인은 이와 동시에 여하한의 다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제47조 (2)항에 따라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조 (2)항에 의거 매수인은, 매도인이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당해 불일치한 물품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물품에 대한 청구가 제3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발송된 통지에 의거 제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체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약정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제35조(물품의 계약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경우 물품의 불일치는, 예컨대 차등품·결함물품·포장불량·수량부족 등이 있다. 또한 본조항은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대체물품을 청구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물품에 대한 청구는 제39조에 따른 불일치의 통지와 함께 발송될 수 있으며, 그 발송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에 따른다. 한편, 제82조(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의 불가능) (1)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곧, 매수인은 당해 의무를 다름없이 이행하여야만 대체물품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조 (3)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제35조에 따라 인도된 불일치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그 수리청구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청구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야 당해 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수리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반드시 본조 (2)항에서의 통지가 적용되는 기한과 동일하여야 한다. 즉, 당해 수리청구가 제39조에 따라 발송된 통지와 함께 제기되거나, 그 통지가 발송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본조항은 물품으로부터 비롯된 불일치한 사항이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용이하게 그 자신 스스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당해 수리를 청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매수인의 수리가 보다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리에 따른 수리비용은 전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물품이 수리된 이후 당사자가 당초 합의하였던 것과 다름없이 당해 물품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그 수리는 유효하게 실시된 것으로 취급된다. 그렇지만, 물품이 수리된 이후에도 수리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당해 하자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⁸⁾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기하여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매수인이 그 대체품 또는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⁹⁾ 매도인[독일]과 매수인[오스트리아]은 매도인에 의해 특별하게 제조된 냉각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비추어, 냉각장치는 시운전을 위해 오스트리아 매수인의 시설로 인도되고, 최종적으로 독일의 냉각시설 상표로 설치될 예정이었다. 본건 상표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자가 개입하여 매수인에게 냉각장치의 인도와 설치를 요구하고 매수인과 중개자간의 계약에서 인도일이 정해졌으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고액의 지체상금지급이 규정되었다.

8)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pp.375-393.

9) 'Oberster Gerichtshof'(Austria), 「7 Ob 301/01t」, 2002.01.14.

① 'Landgericht Oldenburg'(Germany), 「12 O 674/93」, 1994.11.09.

② 'Cour d'Appel de Versailles, 12ème chambre, 1ère section'(France), 「56」, 1998.01.29.

매도인은 본 제안에 있어 송장 이면에 인쇄된 표준조항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매수인은 이전에 적정하게 행해진 3회의 거래에서 그 표준조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표준조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을 도착 후 직접 검사하고 물품수령 후 8일 이내에 명백한 흠결을 서명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울러, 물품의 부적합의 치유는 매도인 선택에 의하고, 물품의 보증기간은 12개월, 이행지와 중재지는 매도인의 영업소,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하였다.

중개자는 상표소유자에게 1996년 6월 1일까지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물품을 1996년 4월 까지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은 1996년 1월 10일에 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인도시기를 5월 13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행기에 5월 28일까지 인도할 수 없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독일의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매수인은 그 시설을 검사할 수 없었지만, 5월 28일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종업원이 육안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육안검사에 의한 하자를 판명하고 그 사실을 직접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하자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중개자와 계약에 의한 이행에 따라 5월 29일부터 6월 1일에 걸쳐 냉각장치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최초 시운전에서 설계상 하자가 판명되고, 매수인은 6월 3일에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5월 31일에 시운전은 당해 하자에 의해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매도인의 종업원은 설치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적한 하자보수를 시도하고, 6월 12일 매수인에게 당해 하자보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동시에 매수인은 전언통신으로 구체적인 하자를 통지하였다.

6월 25일부의 서면에 의하면, 매도인은 전언통신에 의한 하자의 내용을 수령하고 이에 7월 5일까지 보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7월 12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고객은 현재 상태로 냉각장치를 수령할 수 없음과 이에 대체물품을 요구하였다. 7월 23일 매수인은 늦어도 7월 26일까지 당해 하자에 기하여 보수 또는 대체물품인도를 요구하였다. 7월 31일 매수인은 본건 하자 외에 또 다른 하자를 통지하고, 이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대체물품을 조달하겠다는 사실 또한 통지하였으나, 매

도인은 이에 그 어떠한 회신도 없었다.

이후 중개자와의 합의에 의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물품의 보수를 위하여 인도된 냉각장치를 분리하였다. 동년 9월에도 냉각장치를 보수하여 재차 설치했지만, 그럼에도 냉각장치는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1997년 초 매수인은 다시 냉각장치를 분리하고, 모든 하자를 최종적으로 보완하였다. 이후 냉각장치는 순조롭게 운전되었다.

당사자 다툼의 소지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발견한 각각의 흠결을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수인은 이를 부정하였다. 매도인이 양자 간의 또 다른 거래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그 지급을 거절하고, 본건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하자 있는 냉각장치 인도의 결과 발생한 손실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하고 동시에 그 상계를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당사자의 다툼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선 매수인이 물품수령 이후 목적물의 검사에 의해 발견한 하자통지는 8일의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후 발견된 설계상의 하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 되었다. 설령, 매수인의 통지가 지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당해 하자를 보수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사실에 비추어 매도인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본건 통지를 지체하였다고 하는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치유하지 않았다면, 또는 매도인에 의한 당해 치유가 기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제46조 (3)항에 기한 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도 매수인은 당해 하자를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해 치유하여 이에 따른 손해비용을 매도인에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에 의해 행해진 통지가 흠결의 종류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곧, 물품의 부적합은 매도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기하여

매수인은 그 시설에서의 완전한 물품검사의 기회를 매도인의 물품인도지연에 의해 상실하고, 이에 제한된 검사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내용상 충분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매수인은 제74조에 따라 냉각장치의 보수에 기한 비용을 회복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다른 손실은 매도인의 표준 조항에 의해 그 결과적 손해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침언하였다.

(3) 평가

본건 냉각장치의 흠결에 관한 매수인의 통지는 제39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또한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 졌으며, 그 내용은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나아가, 검사의 방법과 통지의 내용, 상당한 기간에 관한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유연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매도인의 본건 물품인도에 관하여, 당초 예정한 기한으로 1996년 4월 이후 5월 28일까지 지체되었고, 또한 발견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지만 하자를 치유하지 못했다. 결국, 매도인의 불이행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매수인은 7월 12일의 매도인에게 통지한 시점 이후 계약해제의 선언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7월 23일, 31일 통지에서 본건 목적물의 대체물품 급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매수인은 이후 당해 냉각장치를 분리하여 스스로 하자보수를 행하여 이를 치유하였다. 매수인은 조기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하자있는 냉각장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매수인 자신의 하자보수에 관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생각건대 매수인에 의한 하자보수 작업도 1997년 초까지 장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사이 매수인의 고객이 중대한 손해를 입었던 것에 기인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추가기간의 지정과 보완

1. 추가기간의 지정(제47조)

(1) 추가기간 지정의 요건

제47조 (1)항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¹⁰⁾ 본조는 제46조의 이행 청구권을 보완하고 있는 규정임과 동시에,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제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규정이다. 곧, 제49조 (1)항 (b)에 의하면, 본조에 따른 추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본조는 제49조와 연계하여야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본조에서 추가기간의 지정은 계약해제의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해제의 구성요건은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본조 (2)항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비록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기간 내에 별단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다. 본조항은 매수인에 의해 허여된 추가기간 동안에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곧, 매도인이 매수인의 추가의무의 이행요구를 수용하여 이로부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당해 의무이행을 위한 준비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추가기간 지정통지에도 불구하고 당

10) Art. 47 : “(1)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2) Unless the buyer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seller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 is not deprived thereb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별단의 구제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요컨대, 본조는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수인으로 하여금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자신의 의무이행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인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추가기간의 지정은 단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기능할 것이다.

매수인은 본조 (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한편, 매도인이 약정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정한 추가기간은 한편으로 매수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물품인도 지연이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물품인도가 지연된 경우에 매수인이 추가기간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당해 계약해제권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

본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어야 한다. 한편,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행을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추가기간 지정 시에 최종기한에 관한 표현은 반드시 명확하여야 한다. 실례로, 추가기간 내에 인도시한을 확정하지 않고, 인도에 대한 애매한 표현, 이를테면 ‘즉시’(prompt) 등의 표현으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본조항에 따라 지정된 추가기간은 기본적으로 의무이행기간의 연장을 획득한 매도인에게 유익할 수 있다. 본조 (2)항에 의하면, 매도인이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또는 이행을 못하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조건을 의무이행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만약,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에 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그 이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

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다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¹¹⁾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인도를 위해 매수인이 추가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제47조와,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제29조의 연관성 및 그 적용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²⁾ 2001년 8월 15일 양당사자는 나프타 25,000톤을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직접 계약체결에 임하지는 않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거래에 관한 서면확인서는 중개업자에 의해 같은 날 당사자에게 송부되었다. 이 확인서는 가격조건과 2001년 9월 10일과 20일 사이에 뉴욕항에 있는 매수인의 탱크로 인도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매도인은 유럽에 있는 매도인의 저장고로부터 뉴욕항의 매수인의 유류탱크로 나프타를 운반하는 선박을 수배했다. 2001년 8월 23일 이전에도 다른 석유제품을 운반한 적이 있는 G라는 선박에 나프타를 적재하였다. 매도인이 운송선박을 선정할 때 매수인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8월 29일 선박을 정하고 30일에 매수인에게 G에 의해 운송할 것을 제안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전에 진공가스과 다른 석유제품을 운반하는데 G선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추단하고 본 선박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G선을 추천한 후 매수인은 선적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결국 G선에 의한 운송을 거부하였고 그 취지를 G선에게 통지하였다. 매수인의 이 같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매도

11) Schwenzer, I.,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pp.355-359.

12) 'U.S. Court of Appeals (3rd Circuit)', 「Nos.06-3390, 06-3525」, 2007. 07.19.

① 'Oberlandesgericht Koblenz'(Germany), 「IU 486/07」, 2007.11.21.

②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Spain), 「Unknown」, 1997.22.03.

③ 'Court of Appeal of Eastern Finland'(Finland), 「S 96/605」, 1997.03.27.

인은 다른 선박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G선에 나프타를 선적하였다. 그러나,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선적지연 때문에 2001년 9월 10일까지 출항하지 못했다. G선은 계약에서 명시한 인도기일을 도과한 2001년 9월 21일에 뉴욕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년 9월 14일 당사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신이 수용하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항구터미널에 G선이 직접 접안해서 하역하는 것이 아닌, 피드선을 이용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수인은 또한 인도기일 내에 인도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9월 23일까지 인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피드선의 용선에 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매수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한 서면의 확인서를 매도인에게 송부하였다.

G선은 9월 22일에 도착하였다. 매도인은 만약 매수인이 피드선으로 인도할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추가기간 22일 내에 본건 나프타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이로부터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추가기간의 지정과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은 G선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은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8월 15일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CISG에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인도기일 2일을 도과하여 뉴욕항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당해 계약을 위반하였지만, 이 지연이 8월 15일자 계약에 비추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 지연 도착으로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항소하면서 9월 14일자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시는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9월 14일자 계약을 해석하면서, CISG 적용에 따른 법리오해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9월 14일자 계약과 관련된 조문은 제29조와 제47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제47조만을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평가

제47조의 목적은 물품인도를 위해 매수인이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다. 9월 14일자 계약은 가격인하조건과 매도인이 피드션으로 나프타를 인도하는 요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심 법원은 본조 (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추가적인 구제의 부당한 시도로 9월 14일 계약을 보았다. 따라서, 9월 14일자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논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곧,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같이 9월 19일자 계약이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달리 9월 14일자 계약이 효력이 없는 계약 변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29조에서는 당사자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계약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매도인은 실제로 9월 15일자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동의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본 법원은 9월 19일자 계약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47조의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이라기보다는 제29조에서 말하는 계약의 변경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9월 19일자 계약은 유효하며 당사자의 행위를 구속한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2. 인도기일 이후의 보완(제48조)

(1) 인도기일 이후의 보완요건

제48조 (1)항은 매도인에게 구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자신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기 이후에도 본 계약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행사가 매수인에게 그 어떠한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¹³⁾ 매도인

13) Art. 48 : “(1) Subject to Art. 49, the seller may,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remedy at his own expense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f he can do so without unreasonable delay and without causing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However, the buyer retains any right to claim

이 사전에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에 따라 지정된 인도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제를 행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본조 (1)항에 의해, 자신이 불이행한 그 어떠한 의무에 관하여 구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반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49조의 제한을 받는다. 곧,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구제권을 배제한다.

통상 매수인은 계약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로서, 곧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매도인의 구제권으로부터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본조 (2)항에 의거 보충되고 있는데, 곧 본조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당해 구제의 수용여부를 매수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구제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제권을 보유한 매수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이 행사된 경우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점은, 불이행이 쉽게 보완될 수 있다면, 당해 계약위반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환언하면, 어떠한 경우이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제46조와 본조에 비추어, 매도인이 인도한 하자 있는 물품의 구제를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일차로 부담한 비용은 일절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품질불량이 중대한 위반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인이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희망하는지 여부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중대한 위반을 결정할 수 있는 참조사항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매도인이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행하지 않더라도, 본조 (1)항에 의거, 매도인이 당해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로부터 매수인이 입은 손실

damages a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If the seller requests the buyer to make known whether he will accept performance and the buy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seller may perform within the time indicated in his request. The buy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of time, resort to any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performance by the seller. (3) A notice by the seller that he will perform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s assumed to include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at the buyer make known his decision. (4) A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under paragraph (2) or (3) of this Art. is not effective unless received by the buyer.”

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름없이 보유한다.

본조 (1)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불이행을 구제하겠다는 통지를 매수인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매수인에게 당해 구제를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3)항은 매수인이 구제를 수용하겠다는 통지는 그러한 요구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수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 또는 그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매도인은 그 자신이 제시한 기간 내에 구제를 행할 수 있다. 이에 본조 (2)항에는 매수인이 그 특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행한 구제와 양립하는 구제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매도인이 본조 (2)항과 (3)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의한 구제방법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는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에 관한 설명이 없는 청구는 본조 (2)항에 따른 효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¹⁵⁾

제27조(통신상의 지연 또는 오류)의 예외로서, 본조 (4)항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한 구제방법에 대한 통지의 요구는 반드시 매수인에게 도달하여야 그러한 요구 또는 통지가 본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7조는 매수인의 통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곧 매수인의 응답이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도착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매도인이 그 불이행을 추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체 없이 행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어떠한 상황에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⁶⁾

14) Huber, P. and Mullis, A.,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218-225.

15) Schlechtriem, P.,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05, pp.733-745.

1993년 3월 15일, 이탈리아 매도인과 독일 매수인이 의약품 제조를 위해 25 μ 이하의 마이크로화라는 규격을 갖춘 화학물품 200kg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물품의 출하는 당초 1993년 3월 말로 합의되었지만, 매도인의 비용에 의해 항공편으로 5월 5일 이루어졌다. 물품은 5월 10일 독일의 뮌헨에 도착, 매수인에 의해 매수인의 고객에게 5월 11일에 발송되었다. 5월 25일 매수인의 고객은 마이크로화가 그 물품을 사용하는 생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해 부적합의 불만사항을 전달하였다.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시험생산이 매수인의 고객이 있는 곳에서 실행되었으나 실패함에 따라 5월 25일 당사자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물품 전부를 이탈리아로 발송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매도인은 5월 25일자 서신으로 매수인에게 물품반송지시를 내고, 반송을 위한 운송비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물품을 수령해서 보수한 즉시,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동일한 운송인에 의해 매수인에게 반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동시에 매도인은 뮌헨의 운송인에게 물품 운송을 위탁하고 매수인 고객의 영업장 소재지를 고려해 물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매수인 고객의 영업소에서 인수하여, 즉시 이탈리아로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뮌헨의 운송인은 하노버 대리점에게 매수인 고객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도록 위탁하였다.

그러나, 6월 1일 매수인이 뮌헨의 운송인에게 문의한 바로는 물품이 당해 운송인의 사정으로 뮌헨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탈리아 운송대리점에서 운송을 위한 사전준비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이 문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그 사이에 그 운송인은 매수인의 창고에서 일부 물품을 인도하고, 6월 4일 20kg을 반출하여 매수인의 고객에게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또한 마이크로화 규격에 적합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6월 8일자 팩스로 매도인에게 당해 부적합 사항을 통지하고,

16) 'Amtsgericht München'(Germany), 「Unknown」, 1995.06.23.

① 'Oberlandesgericht Koblenz'(Germany), 「2 U 31/96」, 1997.01.31.

② 'Cour d'Appel de Grenoble, Chambre Commerciale'(France), 「RG 93/4879」, 1995.04.26.

매수인의 고객이 결국 생산을 정지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회사에 즉시 마이크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고객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체는 용인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이행지체에 상당한 손해배상청구에 임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6월 9일 매도인은 독일에서 마이크로화의 시장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였다. 당일 매수인은 브레멘에 소재한 회사에 전체 물량의 마이크로화를 위탁하고, 6월 14일 그곳에서 매수인의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했다.

매수인은 당초 계약대금에서 운송비를 포함하여 마이크로화를 요하는 비용을 상계하고 그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은 당초 계약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 판결요지

양당사자의 다툼에 기하여 독일 뮌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매수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곧, 제48조 (1)항에 의거 이탈리아에서 부적합을 추완한다는 매도인의 시도는 반환되기로 예정되었던 물품이 이탈리아로 운송되지 않고, 뮌헨에 유치된 후 저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합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 내인, 즉 1993년 6월 8일까지 추완하지 않았다. 6월 8일 이후의 지체는 매도인 고객이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불합리한 추완 때문에 매수인의 이름으로 뮌헨의 운송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이는 매도인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매수인은 전적으로 매도인의 지시에 입각해 운송을 위탁하였으나,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수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송을 위탁할 의무가 있으나 운송계약의 적정한 수행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물품이 아직 뮌헨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에 물품이 뮌헨의 운송인에 의해 이탈리아로 운송되어야만 하

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달려 있고, 또한 매수인, 뮌헨의 운송인, 이탈리아의 운송대리점에 지시를 내린 일에 따라 손해를 면하는 일은 매도인에게 달려있었음에도, 매도인은 그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법원은 물품하자에 대한 판매인의 추완은 이탈리아에서 한층 더 마이크로화 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1993년 6월 8일 이후에 불합리한 이행지체에 이르게 되었던 바, 이러한 사실은,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추완하는 매도인의 권리를 배제한 것이라고 최종 판시하였다.

3) 평가

6월 8일 시점으로, 본건 화학물품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매수인의 고객은 생산중단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내용에 비추어, 더 이상의 지체는 매수인의 불합리한 불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미 제48조 (1)항에 따라, 추완을 할 수 없도록 한 본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매도인은 뮌헨의 운송인에 의해 운송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단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매수인의 고객은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즉시 독일의 회사에 마이크로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매도인은 독일에서의 마이크로화의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 이탈리아로 회송하여 마이크로화 하는 일을 고집하며 매수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이를 대신할 방법으로 그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브레멘 회사에서 마이크로화를 행한 것이다.

본건 물품의 인도는 당초 3월 말 출하를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크게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따른 보수까지 문제시 되어 더욱 큰 폭으로 지연되었다는 시각에서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취급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6월 1일 운송인의 불이행이 판명된 시점에서 매수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제를 선언하고 독일의 회사에 마이크로화 하는 대체조치를 조기에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매수인은 6월 9일에 이르러 스스로 독일 회사에 마이크로화를 위탁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매수인이 행동을 지체한 이유는 판결

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마이크로화의 대폭 지연은 매수인 고객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다다르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 매수인 계약해제권의 요건(제49조)

제49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¹⁷⁾ 곧, 본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제25조에 규정된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제는 최후의 구제책으로서, 매수인이 더 이상의 계약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에 의해 통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으로 부터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수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이후부터 상

17) Art. 49 : “(1)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in case of non-delivery,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 47 or declares that he will not deliver within the period so fixed. (2) However, in cases where the seller has delivered the goods,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unless he does so: (a) in respect of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that delivery has been made; (b) in respect of any breach other than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i) after h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breach; 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 47, or after the sell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perform his obligations within such an additional period; or iii) after the expiration of any additional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 48, or after the buyer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accept performances.”

당한 기간 내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¹⁸⁾

(1) 계약해제의 일반

매수인은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CISG는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조(국내법상의 형식요건)와 제96조(국내법상 형식요건의 고수)에 의거하여 유보가 행해진 경우 별단의 형식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 한편, 통지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매수인의 의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일례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선언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물품인도 또는 반환에 대한 독촉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인된다. 또한 계약해제와 관련되어 제기된 소송은 다름없이 계약해제에 대한 통지로 취급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불일치한 물품 또는 제3자의 클레임이 결부된 물품을 인도하여, 이로부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이 같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은 반드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인은 제39조와 제43조 (1)항에 따라 불일치한 물품 또는 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제40조 또는 제43조 (2)항에 의거,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당해 통지의무의 위반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2)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본조 (1)항 (a)에 따라, 제25조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중대한 계약위반은 다름없이 계약해제의 사유를 구성한다. 매수인은 본조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려면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은 매수인이 당해 계약으로부터 그 자신의 권리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것이어야만 한다.

18)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3rd ed., Wolters Kluwer, 2008, pp. 115-120.

중대한 계약위반은 매도인이 계약, 관습,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또는 CISG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매도인이 계약상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기본적 의무 이외 다른 추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

합의된 추가의무위반이 중대한 계약위반인 경우, 설령 매도인이 계약에 의한 자신의 주요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계약위반은 매수인이 계약에 의한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중대한’(fundamental) 것이 된다.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25조에 따라, 당해 계약위반이 당초 본 계약에서 매수인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매도인 자신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 아울러, 설령 매도인이 당해 계약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3)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

물품인도의 지연은 그 자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기간이 매우 중요한 경우 또는 상황에 따라 그 이행기간이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컨대 계절과일, 크리스마스 트리, 신년연하장 등에 해당하는 지연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¹⁹⁾

계약위반이 중대한 위반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경우는, 차등품의 인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일례로, 불합리하지 않고 특별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할인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품질의 불일치는 중대한

19)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196-201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여름 내내 번창할거라 예상되던 꽃이 일정기간 후에 시들어 버린 경우 이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물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매수인이 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사용하려면 또 다른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결함이 있는 불일치한 물품을 매수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계없이 이는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 국가에서 모두 불법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료가 추가됨으로써 물품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그 사안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국내법상의 법규는 매도인이 물품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수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안이다.

물품이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테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어떠한 불평도 주지 않으면서 물품의 수리를 신속히 완료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48조에서 매도인의 구제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수리가 지연되거나 매수인에게 불합리적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름없이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물품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의 결함은 매수인이 물품을 전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위반이 된다. 그러나, 만약 매수인 자신이 당해 서류의 결함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서류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그 결함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례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교부하였으나, 그럼에도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거나, 매수인이 올바른 증명서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당사자의 계약상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 유보약관의 유효성,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물품을 점유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효한 계약을 부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히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될 것이다.

(4) 추가기간 내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매수인이 제47조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계약해제의 시기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특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은 항시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물품이 이미 인도된 경우에는 본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 상당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계약위반의 행위가 인도지연이거나 그 밖의 계약위반에 따른 행위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도됨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달리, 그 밖의 계약위반에 따른 행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러한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제47조에 따라 추가기간을 지정한 경우 또는 매도인이 제48조 (2)항에 따라 구체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이 정해질 때부터 계약해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기산된다.²⁰⁾

(6) 입증책임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그러한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0) Flechtner, Harry M.,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pp.486-488.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매수인 계약해제권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¹⁾ 매도인[독일]과 매수인[오스트리아]은 그간의 상거래에서와 같이 ‘검은색 돌로 만들어진 묘지석’(gravestones made of dark stone)을 계약의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대금은 환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물품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치유하거나, 물품을 교환하거나, 대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목적물 인도 이후, 본건 묘지석에서 흰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자국은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도 시에는 발견될 수 없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매도인은 묘지석을 검사하기 위해 검수인을 파견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묘지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표준주문서의 조건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환어음이 인수거절로 부도가 나자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상을 계속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없고, 더욱이 물품이 적합하고 적어도 묘지석의 하자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21) ‘Oberster Gerichtshof’(Austria), 「8 Ob 22/00v」, 2000.09.07.

① ‘Arbital Institute of the Chamber of Commerce’(Sweden), 「Unknown」, 2007.04.05.

② ‘Hof van Beroep, Antwerpen’(Belgium), 「2002/AR/2087」, 2006.04.24.

③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Spain), 「JUR 2002\114334」, 2002.02.12.

④ ‘Oberlandesgericht Stuttgart’(Germany), 「6 U 220/07」, 2008.03.31.

⑤ ‘Tribunal of Int’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Russia), 「102/2005」, 2006.02.13.

⑥ ‘U.S. District Court, E.D., Louisiana’(USA), 「Civ. A. 90-0380」, 1999.05.17.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표준약관의 유효성을 다투고 동시에 본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제49조 (1)항에 의거,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매수인의 해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제4조(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에 따라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또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유효한 경우에도 국내법의 규칙이 협약의 기본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매도인이 추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중국적 구제수단으로서 계약해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CISG의 기본원칙인 바, 이에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준거법인 독일법에 의할 경우에도 대금지급유보권의 제한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은 다름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3) 평가

대금지급유보권의 제한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유보권의 제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ISG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하지 못하거나, 대체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감액권을 가지는데 그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VI. 기타 매수인의 구제수단

1. 대금감액(제50조)

(1) 대금감액의 요건

제50조는 매도인의 불일치한 물품의 인도에 따른 매수인의 대금감액에 관한 구제책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물품가치의 감소비율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²²⁾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물품의 결함을 구제하거나 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제를 거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기준은 제35조에 의거한다. 즉, 품질·규격·포장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류의 결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도지연 또는 매도인이 계약내용에 기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 이외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의 구제를 취할 수 없다.

물품의 불일치에 관한 대금감액은 일반적인 위반이든지, 중대한 위반이든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든지, 매도인이 제79조에 의해 책임을 면제하든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감액의 방법 또한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도 관계가 없다. 대금감액은 매수인이 제39조 또는 제43조에 의해 불일치한 물품에 관한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적절한 통지를 발송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불일치한 물품을 원용할 수 없으며, 이에 모든 구제권을 상실한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22) Art. 50 :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However, if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 37 or Art. 48 or if the buyer refuses to accept performance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ose Arts,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

서 제44조(불통지의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당해 결함의 불통지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조에 기한 대금감액권, 또는 이윤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의 청구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그 어떠한 불일치에 관한 구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금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구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데 반하여, 매수인이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제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의 침해를 입은 매수인은 여타의 구제수단을 병합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구제방법을 병합하는 경우에 물품가치의 감소분은 이미 대금감액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가치의 감소된 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손실에 관해서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²³⁾

대금감액은 반드시 비율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곧, 불일치한 물품의 가치와 계약에서 규정된 물품의 장래가치 간의 상호 비율에 의해 당해 물품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인도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때가, 이에 상당한 가치를 확정하는 기산점이 된다.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제39조, 제45조, 제50조, 제74조를 적용하여 물품의 대금감액을 인정한 사례이다.²⁴⁾ 원고[스페인]와 피고[독일]는 독일에서 계약의 목적물로서 감자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물품을 5회로 분할해서 인도하였다. 각 분할분의 감자에는 계약과의 불일치(과손, 변형, 부패 등)가 상당부분 존재하였다. 각 분할분을 수령한 후 매

23) Sondahl, Erika, Understanding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 A Means to Fostering a Mo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2003, pp.255-276.

24) 'Oberlandesgericht Hamburg'(Germany), 「18 U 38/22」, 2002.08.22.

수인은 당해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므로 매수인은 피고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합의한 대로 매 분할분의 물품가격을 12% 이상 할인하였고, 일부분 판매가 불가능한 감자의 가격은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감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및 운송비는 물품대금에서 상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물품의 불일치를 부인하고, 매수인에게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제39조 (1)항에 따라, 매수인은 본건과 같이 쉽게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실시하였다. 나아가, 제50조에 의하면, 양당사자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전매하기로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당해 전매로부터 입은 손실만큼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합의를 전제로, 물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매도인은 당해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게 됨을 추보하였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본건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의 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제45조 (1)항 (b) 및 제74조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하고 물품대금의 감액 또는 상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계약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다름없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당해 불일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건 매수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또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

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본건은 이상의 요건과 제한을 병합하여 적용한 사례로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

2. 물품일부의 계약부적합(제51조)

(1) 물품일부 계약부적합의 요건

제51조는 물품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달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²⁵⁾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구하는 구체수단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이 불이행한 부분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부분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불이행한 부분은 계약의 전부를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5조에 의해 매도인이 계약에서 규정한 수량보다 물품을 부족하게 인도하거나, 계약과 불일치한 물품의 일부를 인도했어야만 한다. 곧, 본조는 그 적용상 물품이 부분적으로 분할될 수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매수인이 제39조에 따라 불일치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은 제51조상 구제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한다.

인도된 물품의 불일치한 부분과 관련하여, 제50조는 매수인이 제46조 또는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이든 이러한 조항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곧 품질에 관한 불일치가 중대한 위반이 되어야 매수인은 당해

25) Art. 51 : “(1) If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rts 46 to 50 apply in respect of the part which is missing or which does not conform. (2)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its entirety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물품의 불일치한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과 일치한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매수인이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당해 계약해제권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제49조 (1)항 (b)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달리 인도된 물품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간 내에 물품의 인도지연은 통상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당해 인도지연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부족한 부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9조 (1)항 (b)에 의거, 추가기간 내에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일부분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특정기한에 물품의 인도를 중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지연보다 불인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도인이 예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물품의 부족분에 대한 인도가 계약에 규정된 인도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다름없이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²⁶⁾

본조 (1)항은 제46조 내지 제50조와 연관된 구제수단만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본조항은 제45조 (1)항 (b)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구제책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본조항에 언급된 구제를 대체 또는 제외하지 않는 한, 당해 구제수단은 감퇴·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설령, 시간이 경과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제74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본조 (2)항에 의하면, 물품의 일부분이 인도되지 않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분이 불일치하는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수인

26) Kee, Christopher,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where only part of the contract has been performed: Comparison between provisions of CISG (Articles 51, 73) and counterpart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November 21, 2002, pp.96-108.

이 당해 계약의 전부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계약위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당해 계약의 전부로부터 기대하였던 주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곧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계약에 적합한 이행이 일부에 해당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⁷⁾ 매도인[이탈리아]과 매수인[독일]은 정기적으로 신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발을 구입하고 있다. 최종 주문은 S브랜트 319족, 대금은 13,000유로로 하여 2001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2001년 7월 고객들로부터 신발의 바느질 땀과 바닥이 헐겁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매수인은 36족에 대해서 그 불만사항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매수인은 서신으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고, 잔여분의 신발을 반송하였다. 매수인은 이 같은 많은 양의 클레임으로 인해 계약상 자신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매수인이 물품대금의 일부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잔여분의 물품대금 11,000유로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총 319족 중 36족만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고, 매수인의 계약해제 선언은 제49조에 의거 정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잔여분의 물품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이에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결요지

상급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곧, 매수인은 2001년 12월 12일자 서신에서 당해 클레임으로 인해 계약관

27) ‘Oberlandesgericht Koblenz’(Germany), 「1U 486/07」, 2007.11.21.

① ‘Bundesgerichtshof’(Germany), 「VIII ZR 300/96」, 1997.06.25.

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잔여분 신발에 대해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본 선언은 매수인이 형식, 참고번호와 수량을 명시함으로써 신발과 함께 사전에 전달된 클레임을 언급하였으므로 충분히 특정되었던 사항이다.

본건 통지로 특정된 36족에는 결함이 있었다. 곧, 접착제가 흘러내린 다거나, 구두에 균열이 있고, 바느질 매듭이나 바닥이 부분적으로 헐거거나, 가죽부분이 여러 차례 너무 짧았다. 이와 같은 제품은 빈약한 재료로 제조되었다고 취급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도 이에 상당할 것이다.

매수인은 아직 팔리지 않은 남은 신발도 동일한 결함을 갖고 있는 물품이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매수인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만사항을 통해, 물품의 품질결함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감소의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은 하자를 내재한 물품이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소규모 신발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하자있는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소규모 신발점에 있어 거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매수인은 신발의 일부에서 명확한 하자가 있는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전체를 해제하는 권리가 있다.

제39조에 의거, 매수인은 불만을 접수하고 즉시 하자있는 물품을 판매인과 그 대리인에게 반송하였다. 해당 신발은 약 10일간의 짧은 간격으로 반송하고, 동시에 불만사항 또한 접수 후 지체 없이 행하였다. 또한 계약해제의 선언은 2001년 12월 12일 서신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2월 12일 서신에서 매수인은 제49조 (1)항 (a)와 제51조 (2)항에 따라, 계약을 적정하게 해제하였다.

제27조에 의거, 매도인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추가기간이 설정되는 일이 계약해지의 요건이라고 하는 판매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기에 그와 같은 추가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평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매도인에게 통지된 구두는 수량적으로는 전체의 10% 내외에 지나지 않지만, 상급법원은 당해 하자가 매수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 부여하는 영향을 다음의 항목에서 판단하고 있다. 우선 하자의 정황은 빈약한 재료가 사용되어 제조 그 자체도 빈약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남은 신발에 대해서도 같은 결함이 있는 물품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수인을 사로잡았다. 둘째 이러한 신발의 하자는 구전으로 널리 확산되어 매수인과 같은 소규모 신발점에 있어는 거대한 손실을 불러 일으킨다는 경험을 매수인에게 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신발의 성질, 하자의 내용, 매수인의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당해 하자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매수인은 하자의 통지에 대해 그 성질을 특별히 정해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였기에 제39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해제의 선언은 계약위반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 제49조 (2)항 (b)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신발의 매매를 정기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인도된 신발의 일부에 생긴 하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매수인은 지금까지 거래에서 이와 같은 품질 상의 하자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비추어 매도인과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당해 판결례는 실무계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3.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제52조)

(1)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의 요건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곧 수량초과인도의 경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의 문제가 상존할 수 있다. 제52조에는 이와 관련하여, (1)항에서 매도인이 규정된 기간 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수량을 초과하여 인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²⁸⁾ 본조에 의하면, 이상의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만약 매수인이 초과한 부분을 수령하였다면, 계약의 비율에 따라 그에 대한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인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달리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상 어느 날 또는 어느 기간 내에 반드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인도날짜가 그러한 기간의 이전이면 다름없이 사전인도가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전의 인도가 계약에 일치한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전인도로 인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매도인은 본래의 인도기간 내에 재차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상 매수인이 사전인도 된 물품에 대해 거절할 경우 신의칙에 기하여, 그 기간 동안 물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사전인도 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제45조 (1)항 (b)에 의하면, 사전물품의 수령은 인도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의되어 있지 않는 한,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물품과 관련되는 서류도 동시에 사전에 이전되는 경우에 사전 인도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수량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무역의 관습상 통상적으로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수량의 $\pm 5\%$ 의 과부족은 허용된다. 곧, 인도된 물품의 수량이 이 범위에 속하면, 초과인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매수인이 초과된 물품을 수령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원하지 않는

28) Art. 52 : "(1) If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before the date fixed,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2) If the seller delivers a quantity of goods great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the buyer may take delivery or refuse to take delivery of the excess quantity. If the buyer takes delivery of all or part of the excess quantity, he must pay for it at the contract rate."

경우 인도수량 초과는, 제39조의 통지의 요구가 적용되는 불일치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어느 경우이든 그 착오된 수량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86조에 따라, 매수인이 초과된 부분을 정당하게 거절하려면, 매수인은 그 초과된 물품을 합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초과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당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초과된 부분의 수령을 거절함에 있어 그 초과된 부분이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초과된 부분을 수령하는 경우 제39조에 관한 요건을 조건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그 어떠한 손해에 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존속한다.

(2) 판결례와 평가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불일치의 통지요건을 만족하였는지의 여부, 매도인의 악의에 상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과부족용인약관의 적용기준 등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⁹⁾ 원고[이탈리아 매도인]는 액자 몰딩을 피고[캐나다 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당초 양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거래에 임하여 왔다.

본 다툼에 기하여, 최종 거래에서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금지급기간을 수차례 연장시킨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매도인의 소송에 대하여 매수인은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도된 일부분의 물품이 불일치하고 더불어 수량초과인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9)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Canada), 「98-CV-142493CM」, 1999.08.31.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Oberlandesgericht Rostock'(Germany), 「6 U 126/00」, 2002.09.25.

2) 판결요지

법원은, CISG가 1988년 및 1992년에 각각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 발효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CISG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이 경우 CISG는 1993년 이후 선적된 물품에만 적용되며, 본건 각 선적분은 독립된 개별계약에 의해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의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왜냐하면 불일치의 통지가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발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은 불일치에 관한 그 어떠한 서면 내지 진술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물품의 하자에 관해서도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에 제40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법원은, 수량초과인도에 관하여, 양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비추어 물품의 수량에 10%의 과부족을 용인하기로 합의하였고, 과거 양당사자의 거래에서 수량초과인도인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평가

본건 판결에 비추어, 과부족용인약관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성질상 계약수량을 정확히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부분의 과부족을 허용한다는 거래조건이다. 이는 수량조건의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운송되는 광석이나 곡물·원유 등의 물품에 적용한다.

1993년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의 과부족용인규정에 따라 $\pm 5\%$ 를 허용한도로 하며, 만일 신용장 수량기재 항목 앞에 ‘about’나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pm 10\%$ 까지의 과부족이 용인된다. 과부족용인한도 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계약된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화물의 성질상 정확히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적 또는 양륙증량조건의 어느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클레임을 당하지 않고 추후 과부족 분에 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 정산하면 된다.

한편, 계약 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용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VII. 요약 및 결론

본고는 CISG를 수용하여 CISG의 적용하에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유관규정(제45조 내지 제52조)을 범위로 당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 및 그 평가에 따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수인 구제권의 총괄로서 제45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위반을 범하는 경우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매수인 구제수단의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계약, 관습,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매수인 구제수단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인 계약위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의 적용상 유의점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객관적인 계약위반을 전제로 두고 있어, 여타 과실의 유형 또는 그 어떠한 명시적 보증에 대한 위반은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제46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본조의 의무이행청구권은 제28조의 제한을 받는다. 매수인의 의무이행청구권은 당해 의무의 존재와 계약위반을

30) 심종석, 「신체계 국제운송론」, 제2판, 두남출판, 2010, 39면.

전제하고 있다. 곧 매수인은 본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47조는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조는 제46조의 이행청구권을 보완하고 있는 규정임과 동시에,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제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규정이다. 곧, 본조에 따른 추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조에서 추가기간의 지정은 계약해제의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해제의 구성요건은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제48조는 매도인에게 구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자신이 계약상 규정된 의무의 이행기 이후에도 계약 또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그 어떠한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제49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다루고 있는 규정인데, 곧 본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제25조에 규정된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7조에 의거 추가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섯째, 그 밖의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제50조는 매도인의 불일치한 물품인도에 따른 매수인의 대금감액에 관한 구제책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물품가치의 감소비율에 따라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물품의 결함을 구제하거나 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제를 거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여야 한다. 제51조는 물품의 일부가 인도되거나, 달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통상 매수인이 구하는 구제수단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이 불이행한 부분에만 적용되며, 기타

의 부분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불이행한 부분은 계약의 전부를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곧 수량초과인도의 경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의 문제가 상존할 수 있다. 제52조는 매도인이 규정된 기간 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수량을 초과하여 인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본조에 의하면, 이상의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만약 매수인이 초과한 부분을 수령하였다면, 계약의 비율에 따라 그에 대한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심종석, 「신체계 국제운송론」, 제2판, 두남출판, 2010.

2. 외국문헌

Bruno Zeller,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2009.

Christopher Kee,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where only part of the contract has been performed: Comparison between provisions of CISG (Articles 51, 73) and counterpart provisions of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November 21, 2002.

Erika Sondahl, “Understanding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 A Means to Fostering a Mo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2003.

Harry M. Flechtner,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Ingeborg Schwenzer,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Joseph Lookofsky, *Understanding the CISG*, 3rd ed., Wolters Kluwer, 2008.

Peter Huber and Alastair Mullis,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05.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Printed in Austria), 2008, ix-xi.

3. 기타(외국판례)

‘Amtsgericht München’(Germany), 「Unknown」, 1995.06.23.

‘Arbital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Sweden), 「Unknown」, 2007.04.05.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Spain), 「JUR 2002\114334」, 2002.02.12.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Spain), 「Unknown」, 1997.22.03.

‘Bundesgerichtshof’(Germany), 「VIII ZR 300/96」, 1997.06.25.

‘Corte di Appello di Milano’(Italy), 「790」, 1998.03.20.

‘Cour d'Appel de Versailles, 12ème chambre, 1ère section’(France), 「56」, 1998.01.29.

‘Cour d'Appel de Grenoble, Chambre Commerciale’(France), 「RG 93/4879」, 1995.04.26.

‘Court of Appeal of Eastern Finland’(Finland), 「S 96/605」, 1997.03.27.

‘Hof van Beroep, Antwerpen’(Belgium), 「2002/AR/2087」, 2006.04.24.

‘Juzgado de Primer Instancia, n. 3 de Badalona’(Spain), 「Unknown」, 2006.05.22.

‘Landgericht Braunschweig’(Germany), 「21 O 703/01」, 2001.07.30.

- ‘Landgericht Oldenburg’(Germany), 「12 O 674/93」, 1994.11.09.
- ‘Oberlandesgericht Hamburg’(Germany), 「18 U 38/22」, 2002.08.22.
- ‘Oberlandesgericht Koblenz’(Germany), 「1U 486/07」, 2007.11.21.
- ‘Oberlandesgericht Koblenz’(Germany), 「2 U 31/96」, 1997.01.31.
- ‘Oberlandesgericht Rostock’(Germany), 「6 U 126/00」, 2002.09.25.
- ‘Oberlandesgericht Stuttgart’(Germany), 「6 U 220/07」, 2008.03.31.
- ‘Oberster Gerichtshof’(Austria), 「7 Ob 301/01t」, 2002.01.14.
- ‘Oberster Gerichtshof’(Austria), 「8 Ob 22/00v」, 2000.09.07.
-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Canada), 「98-CV-142493CM」, 1999.08.31.
- ‘Pretura di Locarno Campagna’(Switzerland), 「6252」, 1992.04.27.
- ‘Tribunal of Int’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Russia), 「102/2005」, 2006.02.13.
- ‘U.S. Court of Appeals (3rd Circuit)’(USA), 「Nos.06-3390, 06-3525」, 2007.07.19.
- ‘U.S. District Court, E.D., Louisiana’(USA), 「Civ. A. 90-0380」, 1999.05.17.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Effects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under CISG**

Shim, Chong-Seok

Regarding to the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s. 45-52), these provisions in CISG address various aspects of the remedies available to a buy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catalogue those remedies and authorize their use art. 45(1); they define their availability and operation(arts. 45(2)(3), 46, 48, 50); they provide for an aggrieved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rts. 47, 49), thereby regulating the buyer's choice between alternative sets of remedies; and they define the operation of the buyer's remedies in certain special circumstances(arts. 51-52). In order to, art. 45 gives an overview of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committed a breach by non-performance of any of its duties under the contract or the CISG. Art. 46 gives the buyer a general right to require the seller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in kind. Art. 47 gives the buyer the 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beyond that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within which the seller must perform its obligations. Art. 48 gives the seller the so-called right to cure, which allows the seller to correct any failure to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under the CISG. Art. 49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buyer is entitled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rt. 50 provides for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when the seller has delivered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rt. 51 deals with partial non-delivery and delivery of partially non-conforming

goods. Finally, Even where the seller does more than i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is an issue of non-performance. Art. 52 addresses two such situations, namely, if the seller delivers goods too early or delivers too many goods.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구제수단(Remedies),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해제(Avoid the Contract), 불이행(Non-Performance)